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는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사업과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등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고창군내 14개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고창군 홈페이지(<http://gochang.go.kr>)를 통해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 목 차 -

I. 농·축·수산·식품 3

1.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집중홍보 / 5
2.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 / 6
2. 전라북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 7
3. 복분자 생산장려금 자원체계 개선 / 8
4. 농식품기업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 / 9
5.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지원 / 10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 11
7.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시행 / 12
8.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구 확대조성 / 13
9.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 14
10.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 15
11.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 16
12.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 17
13.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장기성 필름 공동구매) / 18
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19
15. 수산물 안정성조사 항목 확대 / 20
16. 바다환경 지킴이 채용 / 21
17. 어선의 안전조업 기준강화 / 22
18.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강화 / 23
19.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요건 강화 / 24
20.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25
21.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화 / 26
22. 닭·오리 사육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 27
23.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 28
24. 닭·오리·계락 이력제 시행 / 29
25. 축산물 이력법 과태료 규정정비 / 30
26.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 32
27. 농기계 임대료 결제서비스 확대시행 / 33

II. 문화·예술·체육 35

1.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 37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38
3.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 39
4. 가을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 / 40
5. 고인돌박물관 VR, MR, AR 체험 / 41
6.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홍보프로그램 운영 / 42
7. 고창군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 43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운영 / 44

III. 복지·여성·보건 45

1. 호국보훈수당 확대 지원 / 47
2. 경로 아·미용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변경 / 48

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 49
4.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 50
5. 농어촌 놀이터 확충 / 51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건강검진 / 52
7.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 53
8.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54
9. 청년세대로 진입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 55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56

IV. 환경·녹지 57

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온라인 신청 및 납부 / 59
2.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60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시행 / 61
4. 단절된 영산기맥 복원 한반도 생태축 구축 / 62
5.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63
6. 대기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 64
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제도개선 / 65
8.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66
9.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변경 / 67
10.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 68
11. 수질오염물질 유기물 지표 전환 / 69
12.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 70
13.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확대 / 71

V. 건설·경제·교통 73

1. 한층 더 편리해진 고창사랑상품권 / 75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상품권 지원 / 76
3.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77
4. 행복콜택시 확대운영 / 78
5. 고창다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79

VI. 세제·일반행정 81

1.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운영 / 83
2.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 84
3.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 85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86
5.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실시 / 87
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행 / 88
7.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89
8. 공인중개사법 개정 / 90
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종료 / 91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93

I. 농·수·축산·식품

01.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집중홍보	05
02.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	06
03. 전라북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약수당) 시행	07
04.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체계 개선	08
05. 농식품기업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	09
06.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 지원	10
0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11
08.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12
09.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구 확대 조성	13
1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14
11.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15
12.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16
13.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17
14.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장기성 필름 공동구매)	18
1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19
16. 수산물 안정성조사 항목 확대	20
17. 바다환경 지킴이 채용	21
18. 어선의 안전조업 기준 강화	22
19.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강화	23
20.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24
21.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25
22.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화	26
23. 닭·오리 사육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27
24.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28
25.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29
26. 축산물 이력법 과태료 규정정비	30
27.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32
28. 농기계 임대료 결제서비스 확대시행	33

1.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집중홍보

농어촌식품과 (☎ 063-560-2701)

■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시대가 열립니다.

■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 한반도 첫 수도의 위상과 고품질 고창 농특산품 정체성을 담은 프리미엄급 통합브랜드
- 고창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먹거리의 품격이 높은 통합브랜드

<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

▶추진배경 :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주요내용

-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공선출하조직, 품질관리 기준 통과한 제품 위주)
- 대도시 전광판, 인터넷, 신문, TV, SNS 등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홍보

▶통합브랜드



2.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

농어촌식품과 (☎ 063-560-2695)

- 고창군 농산물 유통창구 단일화를 통해 고품질 명품 고창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추진전략 ■

통합마케팅 역량 강화	생산농가 조직 활성화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
실질적인 마케팅 역량 확보	공선 출하회, 공동출하회 육성	산지유통시설의 통합적·협력적 운영

< 통합마케팅 목표 >

- ▶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취급 목표
 - 2020년 500억원 → 2021년 600억원 → 2022년 700억원
- ▶ 5개 지역농협 및 유통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조공법인으로 출하
- ▶ 조공법인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고창농산물 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3. 전라북도 · 고창군 농업 ·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시행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1)

- 전라북도 최초 고창군에서 지원했던 『농민 공익수당』이 2020년부터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함께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고창군내 농업 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세대당 한명지급)

< 전라북도·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고창군 거주(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 지원제외 ① 부부세대 분리 신청자
②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 신청자
③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④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⑤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⑥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⑦ 그 밖에 농지 이행점검 결과 적발된 자 및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자
-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 지원방법 : 연 1회,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 ▶ 시 행 일 : 2020년 1월

4.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체계 개선

농생명지원과 (☎ 063-560-2531)

- 고창 복분자의 명성을 지키고 농생명 식품 분야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복분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 식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로 식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지원합니다.

<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

- ▶ 추진배경 : 복분자 신규식재 예정지의 토양검정과 영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사율 감소 및 고품질 복분자 생산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단가 : 500원/m²
 - 지원면적 : 330m² ~ 1,320m²
 - 지원조건 : 식재농지 **토양검정** 및 **영농교육 2시간 이수** 필수
 - ※ 토양검정과 영농교육 미 이수시 지원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신규식재 증빙서류 1건(자재구입 영수증 등), 식재 전·후 사진

5. 농식품기업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

농어촌식품과 (☎ 063-560-2702)

- 2020년 12월 1일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라 고창군 농식품기업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합니다.

■ 2020년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

- 2020년 12월 1일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고창군 농식품기업 HACCP 인증 유도
- HACCP 인증을 통한 식품산업 기반 유지 및 안전 식품 생산 환경 조성

< 농식품기업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 >

▶추진배경 : 2020년 12월 1일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라 의무적용 식품 생산업체 대상 HACCP 인증시설 지원으로 식품산업 기반 유지 및 안심 먹거리 이미지 개선

※ 의무적용 :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 즉석섭취 식품, 국수·유당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HACCP 미인증 의무적용 유형 생산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제외품목 : 주류, 발효식품(된장, 간장, 식초 등), 차류 등

- 사업규모 : 6개소

- 지원기준 : 100백만원(군비 50 자담 50) / 업체당

-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 및 인증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신청 : 2020년 1월중

6.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 지원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1)

▣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오랜 농사일로 손발저림, 허리 통증 등 다양한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접근성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
 - 농업인이 야간·휴일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보급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 지원 >

- ▶ 사업기간 : 2020. 1. ~ 12.
- ▶ 사업규모 : 187개소
- ▶ 사업비 : 656,500천원(복권기금 328,250, 군비 328,250)
- ▶ 지원단가 : 1개소 3,500천원 이내
- ▶ 지원품목 : 유형 1(안마의자), 유형 2(혈압계, 발안마기 2개)
- ▶ 주요내용 :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농생명지원과(☎ 063-560-2516)

▣ 영농철 만성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합니다.

- 법무부와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금년도 도입·운영하여 만성적인 영농철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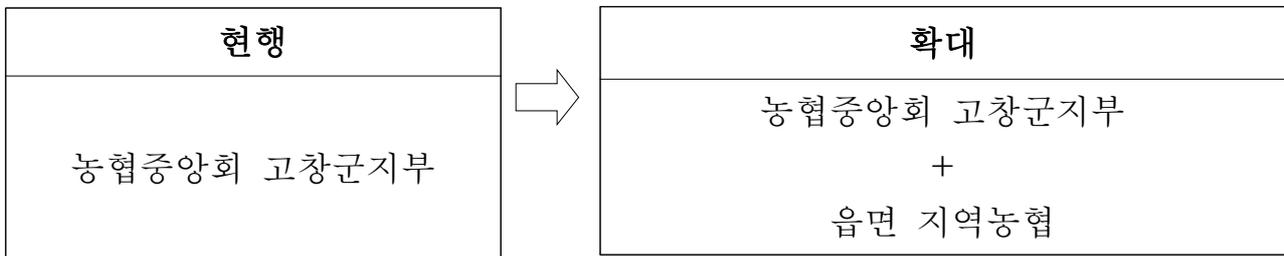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우리군의 농업현장은 대부분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 ▶ 주요내용 :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 ▶ 체류기간 : 1회 90일 연2회(단, 출국후 30일 경과후 재입국), 1년 1회 150일
- ▶ 수급방안 :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거주 가족(4촌이내, 배우자포함)
 - ※ 농가 1가구당 고용인원 :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연간 최대 6명

8.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농생명지원과(☎ 063-560-2522)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처를 읍면 지역농협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만 발급하여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집 근처 읍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확대 >

- ▶ 추진배경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
- ▶ 주요내용 : 건강관리, 문화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1인당 연간 15만원)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5세이상 ~ 만75세미만인자
 - * 제외대상: '19.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가, 타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
-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업정책담당)
- 사 용 처 : 37개 업종(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음식점, 서점 등)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9.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구 확대 조성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6)

■ 고창군 전 지역에 지역별 특색을 살려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구를 1,408ha로 확대 시행합니다.

- 고창군 14개 읍·면에서 경관지구를 조성하여 2020년 4월 고창군 어느 곳이든 유채꽃의 향연을 볼 수 있습니다.
 - 경관지구 조성 면적 486ha(2019년)에서 1,408ha(2020년)로 경관지구 32개 단지 조성

2019년	⇒	2020년
486ha		1,408ha

< 경관보전직불제 면적 확대 조성 >

- ▶ 추진배경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경관 1번지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주요내용 : 경관지구 25개단지(1,170ha), 준경관지구 7개단지(238ha) 조성
 - ※ 작물별 식재면적 : 유채(830ha), 자운영(77ha), 헤어리베치(211ha), 메밀(52ha), 보리(60ha), 이탈리안라이그라스(178ha)
 -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6)

- 생 분해성 멀칭제(멀칭 필름, 멀칭 종이)를 지원하여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친환경인증 농가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생 분해성 멀칭제(멀칭 필름, 멀칭 종이)를 지원합니다.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

- ▶ 추진배경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시행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가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생 분해성 멀칭제(멀칭 필름, 멀칭 종이)
 - 지원단가 : 170원/m²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1.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6)

- ▣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단단해지는 토양층)을 제거하여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농생명 살리기의 근간인 토양살리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2019년	2020년
하우스 660㎡ ~ 3,300㎡ 노 지 660㎡ ~ 3,300㎡	하우스 660㎡ ~ 16,500㎡ 노 지 660㎡ ~ 3,300㎡

<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

- ▶ 추진배경 : 작물의 습해 및 내병성 저해의 원인이 되는 경반층(단단해지는 토양층)을 제거하고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을 복원하여 지력증진을 도모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지원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땅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 지원면적 : 하우스 660㎡ ~ 16,500㎡
노 지 660㎡ ~ 3,300㎡
 -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900원/㎡, 노지 450원/㎡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2.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농생명지원과 (☎ 063-560-2532)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력증진, 작물의 당도, 내병성 및 색상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합니다.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

- ▶ 추진배경 : 지력증진, 작물의 당도, 내병성 및 색상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5개농협(1,982농가)/70,800포
 - 지원내용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황칼슘비료 지원
 - 대상작목 : 단호박, 건고추, 땅콩, 양파, 고구마, 수박 등
 - 지원단가 : 5,650원/포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3.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농생명지원과 (☎ 063-560-2528)

-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 온·습도, 풍속, 토양수분 확인 및 관수, 농약살포 등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장비를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

- ▶ 추진배경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과수 경쟁력 확보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4.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장기성 필름 공동구매)

농생명지원과 (☎ 063-560-2533)

■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하우스의 노후화 된 비닐을 교체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장기성 필름의 공동구매로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합니다.

<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장기성필름 공동구매) >

- ▶ 추진배경 :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에 시설을 개보수하여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향상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
 - 지원내용 : 장기성 필름을 조공법인 원예사업부가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공동구매 지원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해양수산과 (☎ 063-560-2633)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수산직불금이 1어가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1어가당 년 70만원 지급

현행	인상
1어가당 년 60만원 지급	1어가당 년 65만원 지급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 ▶추진배경 :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년 11월)
 - 단계적 인상(' 16- '20년까지 어가당 년 50만원 → 70만원 인상)
 - ※ 16년(50만원), 17년(55만원), ' 18년(60만원), 19년(65만원), ' 20년(70만원)
- ▶주요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16.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확대

해양수산과 (☎ 063-560-2642)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개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6종이 추가(신설)됩니다.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5종* 신설

*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 바이올렛, 메틸렌 블루

-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석항목에 “에톡시퀸(항산화제)**신설”

** 검출기준 : 어류 1.0mg/kg 이하, 갑각류 0.2mg/kg 이하

<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확대 >

- ▶ 추진배경 : 과학의 발달 등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 ▶ 주요내용 : ①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에 추가
②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 시 행 일 : ① 2020년 4월 1일, ② 2019년 9월 4일

17. 바다환경 지킴이 채용

해양수산과 (☎ 063-560-2646)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고창군 바닷가 해안에 “바다환경지킴이” 상시수거 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바다환경 지킴이 채용 >

- ▶ 사업위치 : 고창군 연안해역(상하·해리·심원·부안·홍덕면)
- ▶ 사업량 : 18명
- ▶ 총사업비 : 233백만원(국비50%, 지방비 50%)
- ▶ 사업내용 : 해안가 주요지역을 지정하여 책임구간 내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뿐만 아니라 대국민 계도 및 투기행위 감시 등 사전예방 역할수행
-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18. 어선의 안전조업 기준 강화

해양수산과 (☎ 063-560-2647)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을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되었습니다.

■ 항포구의 출입항 시 신고 의무화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 금지

*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 구명조끼의 착용

- 기상특보 발표 등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 어선의 안전조업 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 ▶주요내용 : ① 어선이 항포구 출입항 시 신고기관에 신고 의무
②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 금지
③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19.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해양수산과 (☎ 063-560-2647)

매년 증가하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 낚시활동 중 쓰레기 투기, 수산동물 판매 등 금지

- 오물·쓰레기, 낚시도구·미끼를 낚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금지
- 낚시제한기준 위반 수산동물 포획 및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 안전요원 승선 및 영업 중 낚시 등 금지

-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선원에 포함)을 승선시켜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 행위 등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

■ 낚시어선의 안정성 검사

-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 의무화
*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낚시활동 중 쓰레기 투기 및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②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③ 매년 안정성 검사 의무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20.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축산과 (☎ 063-560-2610)

■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그 요건이 강화됩니다.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됩니다.
 - 법시행(2020.01.01.)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가축사육업 허가가 금지됩니다.
-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가능

<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

-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 요건 강화
- ▶ 주요내용 : 부화업 허가요건 강화, 매몰지 확보, 종축업·사육업 사육제한지역 강화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21.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축산과 (☎ 063-560-2610)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됩니다.
 - 점검주기 : 2년 → 1년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 (허가농가)2년→1년, (등록농가)4년→2년
-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연장됩니다.
 - 1년 → 2년
-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 5백만원 → 1천만원
-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존에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
 - 승계대상을 상속인, 양수인, 합병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
-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 ▶ 추진배경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 ▶ 주요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 및 교육기간 단축,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벌칙 강화, 축산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 및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22.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화

축산과 (☎ 063-560-2610)

■ 양봉농가는 군수에게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기존 양봉농가는 축산법상 가축사육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 축산과에 의무등록해야 합니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9.8.27.)

<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화 >

- ▶ 추진배경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
- ▶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신제품 개발 및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방안 마련,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등
- ▶ 시 행 일 : 2020년 8월 28일

23. 닭·오리 사육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축산과 (☎ 063-560-2613)

▣ 닭·오리 사육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닭·오리 사육농장은 해당 가축 입식 1주 전에 방역점검표와 입식 전 신고서를 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식 전 신고서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현장 점검 및 보완 조치 후 입식허용

< 닭·오리 사육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 >

- ▶ 추진배경 : 특별방역기간 종료 직후부터 동절기를 조기 대비하고자 가금 농가(139호) 대상 AI 방역점검 중, 방역 미흡농가 지속 확인
- ▶ 주요내용 : 기존 농장 자율 입식 방식에서 입식전 사전신고제 의무화
 -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에 따라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 시행일 : 2020년 2월 의무화

24.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축산과 (☎ 063-560-2619)

▣ 반려동물(개)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강화됩니다.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를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강아지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함.

<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

- ▶ 추진배경 :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개선
- ▶ 주요내용 : 동물등록기준 월령 강화(현행: 3개월 ⇨ 개정: 2개월)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시 행 일 : 2020년 3월 21일

25.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축산과 (☎ 063-560-2618)

▣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국내산·수입산 소고기·돼지고기에서 국내산 닭·오리·계란이 추가 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8호

구분	축종(1)	도축일자(6)	도축장(3)	일련번호(2)
닭	2	200101	001	01
오리	5	200101	002	01

구분	축종(1)	발급월일(4)	의무자(3)	일련번호(4)
계란	3	0101	003	0001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

- ▶ 추진배경 : 닭·오리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 ▶ 주요내용 : 이력관리대상 가축·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26. 축산물 이력법 과태료 규정 정비

축산과 (☎ 063-560-261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이 정비됩니다.

-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유형 단순화 및 전반적 상향 조정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 닭·오리·계란 이력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위반사항	과태료			
	1차	2차	3차	4차
○ 가금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50	100	200	400
○ 가금 사육현황 미신고 및 거짓신고	50	100	200	400
○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오리·씨알 이동 등	50	100	200	400
○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미신청	50	100	200	400
○ 계란의 이력번호 미표시	50	100	200	400
○ 이동시 난좌·운송상자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50	100	200	400

□ 과태료 전후 비교표

(단위 : 만원)

구분	위반사항	과태료(1차)		
		현행	개정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미 신청·변경	10	100	
	○ 출생·폐사·이동·거래 등 미신고	10	50	
	○ 귀표 미부착,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사육현황 미신고	10	50	
	○ 개체·농장식별번호 식별이 어려운 개체 사육시설 이동	20	50	
도축 단계	도축	○ 개체·농장식별번호 식별이 어려운 개체 도축	50	100
		○ 도축 시 이력번호 미신청	10	50
	계란	○ 계란 이력번호 미 신청·표시, 난좌·운송상자 미표시	10	50
포장 유통 단계	국산	○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미신고	10	70
	수입 산	○ 수입시 이력번호 미 신청·표시, 유통식별번호 미부착	10	50
		○ 수입시 양도·수출 미신고, 변경 미신고, 거짓신고	10	50
		○ 수입유통식별번호 확인 곤란 축산물 양도·양수·수출	20	100
판매단계	○ 이력번호 미 게시·표시	40	70	
	○ 이력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등 미발급	30	70	
지도 감독	○ 시정명령 위반	30	100	
	○ 보고·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50	100	
	○ 장부 등 기록사항 미 이행	20	50	

<축산물 이력법 과태료 구정 정비>

- ▶ 추진배경 : 과태료를 현실화해 축산물이력제 실효성을 강화
- ▶ 주요내용 : 과태료 기준 추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단순화, 전반적 상향
-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27.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축산과 (☎ 063-560-2618)

▣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 및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이력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이 수입산에서 국내산까지 확대
-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자 확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700㎡이상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 설치운영자
통신판매 신고업자

< 조리·판매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 >

축산물 범위	판매신고 대상자 및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자
부산물 제외한 이력축산물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700㎡ 이상 •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 설치운영자, 통신판매 신고업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28. 농기계임대료 결제서비스 확대시행

농업기술센터 (☎ 063-560-8872)

- 농기계임대료 고창사랑 상품권 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임대료 납부 민원편의를 제공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기계임대료 납부환경 개선

현행	확대
현금, 계좌입금, 카드	현금, 계좌입금, 카드, 고창사랑 상품권

< 농기계임대료 결제서비스 확대시행 >

- ▶추진배경 : 지역사랑 상품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수수료 등 납부방법 확대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장려
-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납부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II. 문화 예술 체육

- 01.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37
- 0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38
- 03.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39
- 04. 가을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 40
- 05. 고인돌박물관 VR, MR, AR 체험 41
- 06.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홍보프로그램 운영 42
- 07. 고창군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43
- 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운영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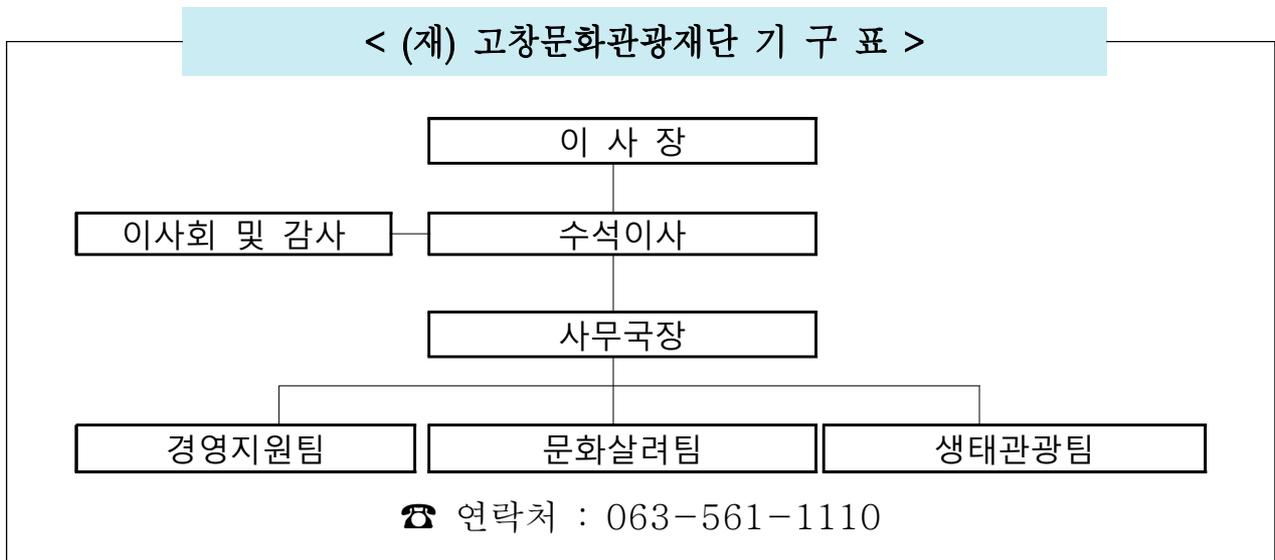
1.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재)고창문화관광재단 / 문화예술과 (☎ 063-561-1110 / 063-560-2448)

▣ 고창군의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산업 이제는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함께 추진합니다.

- 조 직 명 : (재)고창문화관광재단
- 장 소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고창문화의전당 2층)
- 이 사 장 : 고창군수
- 주요업무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문화관광 관련 각종 공모사업 전략수립
 - 문화예술관광단체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 (재) 고창문화관광재단 기 구 표 >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문화예술과 (☎ 063-560-2452)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2020년부터 9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사업임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발급
 - 사용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가능
- 2020년도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지원금 9만원으로 상향 지원
 - 2021년까지 1인당 연 지원금 10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계획

현행	→	개정
{ 1인당 연 지원금 } 8만원		{ 1인당 연 지원금 } 9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추진배경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자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 ※ 미사용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 교환 불가
 - ※ 2년간(2019~2020) 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021)년 발급 제한됨
- 시행일 2020년 2월 1일

3.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유산관광과 (☎ 063-560-2956)

-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문화재안내판으로 개선하여 고창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문화유산과 더불어 즐거운 고창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 사업목적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위주의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과 더불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및 안내문안을 개선하고자 함.
- 알기 쉽고 재미있는 문화재안내판으로 개선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존관리의 기반을 조성.

▶ 기 간 : 2020. 1. ~ 8.

▶ 대 상 : 고창군 전 향토문화유산(8개소)

▶ 주요내용

- 안내문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안내판 정비

▶ 추진방침

- 어려운 용어(전문용어 등)를 지양하고 알기 쉬운 어휘 사용
- 관련 설화·전설·이해를 돕는 사진 등 추가
- 마모 등으로 인한 훼손 안내판 교체

4. 가을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

문화유산관광과 (☎ 063-560-2947)

▣ 2020년 가을 여행주간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 우리군의 우수한 지역문화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홍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을여행주간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 여행주간 시티투어 >

- ▶기 간 : 2020. 9. ~ 10.(예정)
- ▶장 소 : 고창군 주요 관광지
 - 선운사(상사화) ~ 학원농장(가을꽃) ~ 고창읍성 등 연계 관광 상품 운영
- ▶운영횟수 : 15회 정도(가을여행주간)

※ 시티투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5. 고인돌박물관 VR, MR, AR 체험

문화유산관광과 (☎ 063-560-2952)

- 새로운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한 고인돌박물관에서 우리군의 우수한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VR, MR, A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고인돌박물관 VR, MR, AR 체험

- ▶기 간 : 2020. 1.~
- ▶장 소 :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 2층 : 고창 청동기 고인돌 VR 시간여행
 - 3층 : 우리는 선사시대 사냥왕! (다인용 인터랙티브)
 - 죽림선사체험마을, 고인돌유적지 3코스 : AR체험

※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6.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 · 홍보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관광과 (☎ 063-560-8664)

-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고인돌유적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고창의 문화예술과 결합한 활용사업을 운영합니다.

<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홍보프로그램 운영 >

- ▶ 기간 : 2020. 4. ~ 11.
- ▶ 장소 :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유적
- ▶ 운영프로그램
 - 윤도장과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
 -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 찾아가는 선사학교 및 고인돌과 청동기시대 불의 과학
- ▶ 운영횟수
 - 윤도장과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 : 연 7회(4~10월중 월1회)
 -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 연 30회
 - 찾아가는 선사학교 및 고인돌과 청동기시대 불의 과학 : 70회,
선사시대 과학 캠프(1박2일) 1회
- ▶ 기대효과
 -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에서의 생생한 문화재 활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 참여 유도

7. 고창군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체육청소년사업소 (☎ 063-560-8911)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 선거를 통하여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해 고창군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 선출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9.1.15)에 따라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수 없도록 제43조의2 신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수 없다(시행일:2020.1.16.)

현 행	개 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민간체육회장 선출

< 민간 체육회장 선출 >

▶추진배경 :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9.1.15.)

▶주요내용

①정치와 체육의 분리

②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③회장선출기구(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

▶시 행 일 : 2020년 1월 16일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 운영

체육청소년사업소 (☎ 063-560-8915)

- 취약계층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신설 운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

- ▶추진배경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층의 증가와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성 제기
- ▶운영인원 : 40명 (초등생20, 중학생20)
- ▶주요내용 :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생활지원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등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Ⅲ. 복지·여성·보건

01. 호국보훈수당 확대 지원	47
02.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변경	48
0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설	49
04.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50
05. 농어촌 놀이터 확충	51
0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 건강검진	52
07.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53
08.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4
09. 청년세대로 진입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55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56

1. 호국보훈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과 (☎ 063-560-2271)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 보훈급여 미 수령 참전유공자 및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까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 호국보훈수당 확대 지원 >

- ▶ 추진배경 :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예우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
- ▶ 주요내용 : 보훈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까지 확대 지원
 - 지원액 : 6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시 행 일 : 2020년 1월

2. 경로 이·미용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과 (☎ 063-560-2290)

■ 경로 이·미용비 지원을 고창사랑상품권(경로이·미용 전용)으로 변경됩니다.

- 고창 관내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를 고창사랑상품권 (이·미용비 전용, 유효기간 5년)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2019년 바우처 카드 -----> 2020년 고창사랑상품권(경로 이·미용권전용)

< 경로 이·미용권비 지원 변경 >

-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고창 관내 거주 만 80세이상 어르신의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제공
- ▶ 주요내용 : 고창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 지원
 - 대 상 : 고창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6,500여명)
 - 지원내용 : 연1회 60,000원
 - 지원방법 : 경로 이·미용비 고창사랑상품권(이·미용비 전용)으로 지원 (유효기간 5년) ※분실 시 재발급 불가

3. 장애인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신설

사회복지과 (☎ 063-560-2280)

- 좋은돌봄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습득시켜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설됩니다.

- 장애인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은 지체, 발달 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돌봄과 수요자 중심의 재활프로그램, 직업활동 지원을 통해 직업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신설

< 장애인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설 >

- ▶ 추진배경 : 좋은 돌봄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유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 지원
- ▶ 주요기능 : 주간돌봄, 직업적응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 재활치료사업, 취미생활지원 등
 - 직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제공(물건생산 없이 훈련 위주)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도록 지원
- ▶ 대 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 이용인 15명
 - 직업재활시설 : 이용인 20명
-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0-6(사회복지시설지구 내)
- ▶ 시 행 일 : 2020년 하반기 신설

4.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사회복지과 (☎ 063-560-2295)

■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 만5세~12세이하 아동 대상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개소 확충
 - 상하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예정(2020.07.)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 ▶ 추진배경 :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충 필요
- ▶ 주요내용 :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확충
- ▶ 시 행 일 : 2020년 7월

5. 농어촌 놀이터 확충

사회복지과 (☎ 063-560-2295)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방임문제 해소 및 안전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장면 농어촌놀이터를 운영합니다.

- 농촌지역 방과후 취학아동의 돌봄, 교육,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놀이터 1개소 확충
 - 무장면 농어촌 놀이터 1개소 운영 예정(2020. 5.)

< 농어촌놀이터 운영 >

- ▶ 추진배경 : 농촌지역아동의 안전한 놀 권리 보장 및 신체활동, 심리정서지원 및 문화체험 등 아동발달을 위한 농어촌놀이터 확충 필요
- ▶ 주요내용 : 무장면 농어촌 놀이터 1개소 확충
- ▶ 시 행 일 : 2020년 5월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 건강검진

사회복지과 (☎ 063-560-2295)

- 시설의 전염병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위해 이용아동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무료 건강 검진 14종 실시
 -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운영(2020.01.)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건강검진 >

- ▶ 추진배경 : 시설이용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1회 무료 건강검진으로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 및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 건강검진(14종)
- ▶ 시 행 일 : 2020년 1월

7.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사회복지과 (☎ 063-560-2296)

- 보육의 품질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됩니다.

- 보육의 질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과정 및 보육시간이 변경되며, 자동출결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09:00~15:00) + 중일형 (07:30~19:30) <중일형> 담임교사 교대·전담의 통합 운영 ■ 출석부 수기 작성 보육료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09:00~16:00) 연장보육 (16:00~19:30) <연장보육>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 자동출결시스템 도입 보육료 생성

<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

- ▶ 추진배경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 주요내용 : 기존 보육자격에 따라 구분되던 맞춤형 및 중일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한해 연장보육 제공
- ▶ 시 행 일 : 2020년 1월

8.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소 (☎ 063-560-8736)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 ▶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추진
- ▶ 주요내용 :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9. 청년세대로 진입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울력행정과 (☎ 063-560-2348)

■ 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대학 진학자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의 고등교육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대학진학 축하금 600백만원 편성

<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

- ▶지원내용 :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주소가 고창군에 되어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약 600여명
- ▶지원기준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전문대이상)에 진학한 학생
- ▶사 업 비 : 600백만원(군비)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고 100만원
- ▶지급시기 : 2020년 4월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울력행정과 (☎ 063-560-2348)

- 202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200원 인상되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학교급식 보호자 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단가가 인상되어 1,644백만원 편성

〈현행〉	〈개정〉
초등학교 2,600원 -->	초등학교 2,800원
중·고등학교 3,300원 -->	중·고등학교 3,500원

<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비중 보호자가 부담할경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5,422명(초 2,128 중 1,388 고 1,906)
- ▶사업비 : 1,644백만원(도비 759 군비 885)
- ▶시행일 : 2020년 3월 2일

IV. 환경·녹지

- 0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온라인 신청 및 납부 59
- 02.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60
- 0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61
- 04. 단절된 영산기맥 복원 한반도 생태축 구축 62
- 05.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63
- 06. 대기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64
- 0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제도개선 65
- 08.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66
- 09.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변경 67
- 10.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68
- 11. 수질오염물질 유기물 지표 전환 69
- 12.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70
- 13.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확대 71

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온라인 신청 및 납부

생태환경과 (☎ 063-560-2872)

■ '20년 1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10% 감면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 납부기간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시납부 및 감면에 대한 인지도 및 징수율 제고
 - 연납 신청기간 조정(3월 → 1월)
 - 연납 신청 방법 조정(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기존	개정
① 연납신청기간(3월 16일~3월 31일) ② 연납신청방법(오프라인) * 시·군 방문 및 유선 연납신청	⇒ ① 1월로 조정(1월 16일~ 1월 31일) ② 연납신청방법(온라인 포함) *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연납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온라인 신청 및 납부 >

- ▶추진배경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연납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납시 10% 감면해주는 점을 이용해 연납 신청 기간을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 ▶주요내용 : 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 조정(1.16~1.31)
②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방법 추가(위택스 신청 추가)
-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2.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생태환경과 (☎ 063-560-2872)

▣ 대중교통차량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 철도, 시외버스 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물질 중 미세먼지(PM-10)를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
 -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측정 의무화(연간 1회)
-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연면적 430㎡이상인 키즈카페 등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및 가정·협동어린이집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
 -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유지기준 적용

기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교통차량: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②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③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보존(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② 가정·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③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보존(10년)

<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 ▶추진배경 :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중교통 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관리 대상 추가
- ▶주요내용 : ① 대중교통차량(철도, 시외버스) 권고기준(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연간 1회 측정 의무
 ②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가정·협동어린이집도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연면적 430㎡ 이상)
 ③ 취약계층 이용시설(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엄격한 유지기준 적용
 ④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및 유지기준 초과시 공개 의무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생태환경과 (☎ 063-560-2872)

■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함
 - '17년부터 '19년까지 환경부 시범사업(1차, 2차, 3차) 추진중이며, '20년부터 본격 추진함
 - 참여시점(3~6월) 및 종료시점(11월)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함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대상이며, 친환경차량은 제외됨

기존	개정	
① 탄소포인트제* 추진('08~) - 최고 연 7만원 * 가정상가의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감축실적에 따른 에너지 인센티브를 지급 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시범운영	⇒	① 현행대로 추진 - 최고 연 10만원 ② 2020년 본사업(350대)으로 추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

-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 ▶주요내용 : ① 참여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② 2020년에는 350명을 선착순으로 홈페이지(car.cpoint.co.kr)를 통해 모집계획
- ▶시행일 : 2020년 3월중 참여자 모집예정

4. 단절된 영산기맥 복원 한반도 생태축 구축

생태환경과 (☎ 063-560-2688)

- ▣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을 복원하여 국토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방장산, 문수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능력을 높이는 생태축을 구축합니다.

- 육교형 생태통로 건설 3개년 계획 추진.
 - 1차년도 : 설계
 - 2·3차년도 : 시공

< 단절된 영산기맥 복원 한반도 생태축 구축 >

- ▶추진배경 : 생태축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확보
- ▶사업비 : 714백만원(국비 500(70%), 군비 214(30%))
- ▶사업기간 : 2020 ~ 2022
- ▶주요내용 : 생태통로 설치

5.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생태환경과 (☎ 063-560-2688)

■ 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서
전라북도 제1호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됩니다.

■ 2020년 운영 프로그램

- 애벌레학교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표 고충 기르기 프로그램
- 지오학교 : 지질공원의 지질자원 학습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미디어교실 : 자연생태 영상 제작 프로그램
- BR(생물권보전지역) 체험교육 :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유네스코 청소년 미래 포럼 : 포럼교육 프로그램

<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 ▶추진배경 :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
- ▶사업기간 : 연중
 - 교육 전 참가자 공고 모집 예정 -
- ▶시행기관 :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 전라북도 / 고창군
- ▶시행장소 :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6. 대기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태환경과 (☎ 063-560-2876)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30%이상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 물질 8종 기준이 신설됩니다.

- 1.5MW 이상 섬(도서)발전시설,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kg/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의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추가
 - 동물화장시설은 '20년13월31일까지, 흡수식 냉난방기는 설치 시기에 따라 '20년~'22년 이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먼지 등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은 평균 30%이상,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평균 33%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벤조(a)피렌 등 8종은 배출기준 신설
 - 강화되거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은 '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
 - 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염소는 별도로 부과항목이 있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어 삭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② 일반(10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13종)배출허용기준 약 30% 강화
③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④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신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제도개선

생태환경과 (☎ 063-560-2881)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됩니다.

-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제도개선 >

- ▶추진배경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 활성화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 하도록 함
②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4월 17일

8.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생태환경과 (☎ 063-560-2881)

- 일반폐기물(가정 발생 기저귀, 노인요양시설 기저귀)와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5년새 1.4배 증가) 대비 처리시설 태부족하여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발생량 저감이 절실
-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 제외

기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혈액, 체액,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②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 처리방법: (배출)전용용기, (보관)별도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운반) 전용 냉장차량 (처리)전용소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②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 처리방법: (배출)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에 배출 (보관)별도 보관장소 보관 주회소독 (운반) 냉장차량기저귀만 별도, (처리)일반소각장

<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 ▶추진배경 :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②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된 기저귀의 처리방법 신설: (배출)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에 배출 (보관)보관일은 13일(냉장보관시 30일)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 주1회 소독 (운반)냉장차량(기저귀만 별도), (처리)일반소각장
- ▶시행일 : 2019년 10월 29일
- 경과조치 :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 허용,
② 2019년 12월 31일 이후라도 병원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허용

9.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변경

생태환경과 (☎ 063-560-2883)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자의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매출액의 5% 이내로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가 강화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해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대체 불가
- 폐수처리과정에서 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 강화
 - 폐수처리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정기검사 제도 도입

기 존	개 정
① 과징금 부과한도액(3억원이하) - 대체부과횟수 제한없음 ② 측정기기부착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③ 폐수처리 등록제	⇒ ① 과징금 부과한도액(매출액의 5%이내) - 대체부과횟수 1회/2년 ② 측정기기 부착(폐수처리업추가) ③ 폐수처리업 허가제 ④ 폐수처리업 정기검사제도 도입

<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변경 >

- ▶추진배경 :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과징금 부과액 변경 및 부과횟수 제한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준수사항 개정
 ③ 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폐수처리업 추가
 ④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 수탁 운영업체의 동일시설 측정기기 관리대행 금지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10.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생태환경과 (☎ 063-560-2883)

- 2020. 3.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어 부숙도 검사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살포가 의무화 됩니다.

- 축산농가,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 등 퇴비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고, 설치자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을 살포해야 합니다.

구분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기준
배출시설 설치자	1,500㎡이상 배출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 배출시설	부숙중기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든 퇴비화 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부숙단계 : ① 미부숙, ② 부숙초기, ③ 부숙중기, ④ 부숙후기, ⑤ 부숙완료

- 부숙도 검사 미이행 또는 미부숙 퇴비 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신 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① 부숙도 검사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 살포 의무화 ②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

- ▶추진배경 : 충분한 부숙과정을 거친 퇴비 사용을 유도하여 토양·수질·악취 등 환경오염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본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어, 퇴비 부숙도 검사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살포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0년 3월 25일

11. 수질오염물질 유기물 지표 전환

생태환경과 (☎ 063-560-2883)

■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 지표 현행 CODMn을 TOC(총유기탄소량)로 대체합니다.

- 산업폐수 유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현행지표 중 CODMn을 TOC로 대체하고 처리시설별 TOC 기준이 신설됩니다.
 - CODMn은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CODMn을 제외하고 TOC를 도입

기 존	개 정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지표 COD _{Mn} , BOD	⇒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지표 TOC, BOD

< 수질오염물질 유기물 지표 전환 >

▶추진배경 : 산업폐수의 유기물질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으로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실시

▶주요내용 : 공공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및 폐수배출시설의 TOC 기준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적용기간		신규: 2020.1.1. 기존: 2021.1.1.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000m ³ /일 이상 폐수배출량				2,000m ³ /일 미만 폐수배출량			
	창장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창장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25이하	40이하	50이하	25이하	30이하	50이하	75이하	25이하
	적용기간		신규: 2020.1.1. 기존: 2022.1.1.					

▶시행일 : 2020년 01월 01일(신규시설)

12.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생태환경과 (☎ 063-560-2888)

- '16년부터 '19년까지 군비 지원사업으로 한 위생업소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20년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음식점 등에 대하여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더 많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확대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 추진기간 : '16년 ~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미용업 	➔
	<p>[확대]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미용업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 100, 자부담 100)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 <p>[신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사 업 비 : 50백만원(도 15, 군 20, 자부담 15) ※ 개소당 최대 7백만원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설 >

- ▶추진배경 : 시설이 낙후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보다 깨끗한 조리,接客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시설개선자금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13.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확대

환경시설사업소 (☎ 063-560-2919)

' 17년부터 폐농약빈병류 수거단가 인상에 따라 수거가 활성화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농약빈병 수거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환경부 보조사업과 별도로 폐농약 빈병류 수거보상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국비 지원규모가 시군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농약빈병 수거가 원활치 않아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약빈병 수거량을 확대

○ 수거(농업인) → 계량(한국환경공단) → 이송(민간수거사업자)

1. 수거보상금 지급(한국환경공단 → 농업인)
2. 수거보상금 지급(군 → 농업인) * 확대시행

■ 수거보상비 지원

- 폐농약빈병류 1kg(16개)에 1,600원 지급
- 폐농약봉지류 1kg(46개)에 3,680원 지급

현 행	개정(확대)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급 1. 국비사업(국비 50%, 도비 50%)	⇒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급 1. 국비사업(국비 50%, 도비 50%) 2. 자체사업(도비 50%, 군비 50%)

☑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17년부터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수거지연 등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거보상비(국비 50%, 도비 50%) 소진 시, 2020년은 군에서(도비 50%, 군비 50%) 수거보상비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V. 건설·경제·교통

- 01. 한층 더 편리해진 고창사랑상품권 75
- 0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상품권 지원 76
- 03.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77
- 04. 행복콜택시 확대운영 78
- 05. 고창다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79

1. 한층 더 편리해진 고창사랑상품권

상생경제과 (☎ 063-560-2351)

-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고창사랑 상품권'의 사용방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현 행	⇒	확 대
지류식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지류식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발행개요

- 종 류 :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카드형, 모바일형**
- 판 매 처 :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읍·면 단위농협
- 사 용 처 : 고창군 소재 상품권 가맹점
- 할인율 및 구매한도 : 개인(5%/월 50만원), 가맹점 및 법인(없음)

▶가맹점 지속모집

- 대 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준)대규모점포, 사행성(게임물 등) 업소 제외
- 접 수 처 : 고창군 상생경제과(063-560-2351),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상품권 지원

상생경제과 (☎ 063-560-2571)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2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 조성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상품권 지원 >

▶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4.5, 군비 25.5)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지원금액 : 20만원상당 고창사랑상품권(1회)
- 사업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20만원상당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3.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상생경제과 (☎ 063-560-2418)

■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합니다.

- 관내 주요 승강장에 버스 운행정보(노선정보, 버스 도착시간)를 제공해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자 및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기상상황(날씨, 미세먼지 등) 및 군정 홍보사항을 제공하여 군민 편의 도모
- 설치 승강장(21개소)

번호	정류장명	주소	번호	정류장명	주소
1	석정휴스파	고창읍 석정리733	12	선운사터미널	아산면 삼인리392-1
2	전북대학교고창캠퍼스	고창읍 도산리614-3	13	신기	심원면 연화리729-2
3	월곡리(온천마을제일APT)	고창읍 월곡리585	14	공음	공음면 칠암리561-1
4	청룡동	고창읍 교촌리243-9	15	명동	상하면 하장리939-6
5	무장터미널	무장면 성내리212-1	16	남시	해리면 하련리169-3
6	흥덕터미널	흥덕면 흥덕리556	17	예촌	고수면 봉산리1767-2
7	우체국앞 (성내면)	성내면 양계리206-9	18	왕림	신림면 도림리677-1
8	중흥	부안면 중흥리138-1	19	중앙동	고창읍 읍내리256-12
9	성송	성송면 계당리570-10	20	신사거리	고창읍 읍내리591-9
10	대산면사무소	대산면 매산리175-5	21	고창시장 고객편의시설	고창읍 시장안길 37
11	아산우체국	아산면 상갑리336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 개요

- 운영일 : 2020. 1. ~
- 사업비 : 399백만원(국비 120, 도비 80, 군비199)
- 사업내용 : 농어촌버스 주요 승강장 버스 운행 정보 실시간 제공
- 사업량 : 주요 승강장 안내단말기 21개소, 농어촌버스 통합단말기 33대

4. 행복콜택시 확대 운행

상생경제과 (☎ 063-560-2572)

■ 2020. 1월부터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행복콜택시를 확대운영합니다.

- 대중교통 취약지역(오지마을 등)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 실시로 교통복지 향상

현 행	⇒	확 대
거리 : 1km 대상 : 13개 읍면 48개 마을		거리 : 0.7km 대상 : 14개 읍면 89개 마을

< 행복콜택시 확대 운행 >

▶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운행대상 : 14개 읍면 89개 마을(관내 오지마을)
- 운행구간 :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
- 사업내용 : 마을회관~최단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7km이상인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5. 고창다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도시과 (☎ 063-560-2567)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의 개발과 보존에 고창다운을 담아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 고창군 경관조례(2018년 제정)
 -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2018년 제정)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대 상 : 고창군 일원
 - 설문조사 : 2020. 3월까지
 - 주민공청회 : 2020. 4. ~ 8. 기간 중 시행
 - 완료시기 : 2020년 말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기대효과 >

- 관내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심의 자문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고창다운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 (고창군 경관조례 제37조) 심의 및 자문시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VI. 재난안전·세제·부동산

- 01.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운영 83
- 02.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84
- 03.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85
- 0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86
- 05.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실시 87
- 0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88
- 07.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9
- 08. 공인중개사법 개정 90
- 0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종료 91

1.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운영

재난안전과 (☎ 063-560-2660)

원전에 대한 불안 이제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가
함께해 이를 해소합니다.

■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 위 치 : 고수면 고인돌대로 1360(예정)
- 사 업 비 : 4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 주요활동
 - 고창군 포함 전북권 지역 방사능 감시활동 및 조사분석
 - 원전정책 및 각종 현황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 등

■ 운영계획

-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사무실 구축 : 2020. 1. ~ 3.
- 고창분소 운영 : 2020. 5월

< 이후 추진 방향 >

- ▶ 고창분소 운영활성화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창군 민간환경감시센터로 확대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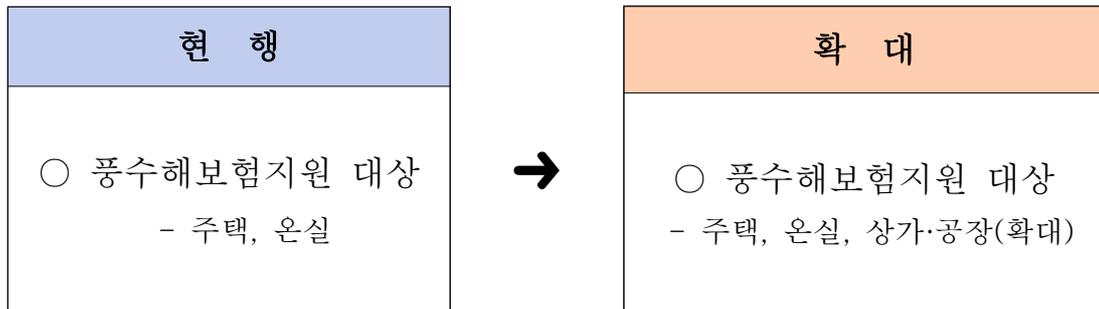
2.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재난안전과 (☎ 063-560-2664)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상가·공장)까지 확대됩니다.

■ 풍수해보험 지원제도

- 추진목적 :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상가·공장
- 지원율 : 주택(76.6~90.7%), 온실(70.25%), 소상공인(65.15%)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부담 완화
 -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 ▶주요내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발생한 손해액 실손 보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3.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재난안전과 (☎ 063-560-2656)

▣ 군민안전보험이 확대 시행 됩니다.

-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민이나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타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함
- 보장내역 : 화재·자연재해 등 사망·후유장해 14종

2019년 군민안전보험	2020년 군민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고창군민○ 가입방법 : 일괄자동 가입○ 보장금액 : 100원~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고창군민○ 가입방법: 일괄자동가입○ 보장금액 : 2,000만원

2020년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기간 : 2020. 2. 8 ~ 2021. 2. 7○ 가입대상 : 고창군민(일괄자동가입)○ 가입내역 : 화재·자연재해 등 사망 및 후유장해 14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2,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2,000만원)- 자연재해사망(2,000만원)- 역사사고사망(2,000만원)- 의사상자 지원(2,000만원)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재무과 (☎ 063-560-2477)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합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기존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로 적용하였으나, 6억초과 ~ 9억원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추진배경 : 6억 및 9억원에서 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가해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

▶주요내용

- ① 취득가액 6억 초과 ~ 9억 이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조정
※ 3단계 단순누진세율 → 누진 단계 세분화세율
- ②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성립일 : 계약시점이 아닌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5. 지방세 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실시

재무과 (☎ 063-560-2493)

■ 납부자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납부자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에서 지방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1가지 종류의 지방세외수입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확인 불편, 고지서 분실로 납부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서 도입

▶주요내용

① ‘스마트 위택스, 11개 시중은행 금융앱*, 인터넷 지로(금융결제원), 3개 간편결제사‡’ 에서 지방세외수입 고지·납부 가능(1가지만 선택 이용 가능)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중앙회

‡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② 대상세목 : 재산임대수입 6종, 사용료수입 5종, 과태료 20종

③ 신청방법 : 앱에서 직접 신청, 시·군 세정부서 방문 신청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재무과 (☎ 063-560-2489)

- '20년부터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신고했으나,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 12153호) 제13조
 -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세무서 중 어느 한곳을 선택 방문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 ▶추진배경 : 국민 납세편의 제고 및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신고
- ▶주요내용 :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세무서 중 어느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한번에 신고처리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종합민원과 (☎ 063-560-2422)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에서 “30일” 로 단축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3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기존의 재량사항 이었던 해제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해제 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 추가

-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 추가
-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8. 공인중개사법 개정

종합민원과 (☎ 063-560-2422)

■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과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업무 방해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부동산 시장질서의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 마련.

< 공인중개사법 개정 >

- ▶추진배경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부동산 중개 광고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2020년 8월 21일

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종료

종합민원과 (☎ 063-560-2422)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종료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 기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도시지역 : 1,500㎡ 이상
- 도시지역 외 지역 : 2,500㎡ 이상

○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 외 지역 : 1,650㎡ 이상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 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종료 >

▶추진배경 :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주요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1. 농·수·축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 브랜드 개발 및 사용	<신 설>	○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사용허가 및 집중홍보 추진 - 수박, 멜론, 쌀 등 고품질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 및 국내외 집중홍보 추진 	농어촌식품과 (063-560-2701)
2.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	<신 설>	○ 5개 농협 및 유통회사 취급 고창농산물 전량 조공법인 출하 목표로 추진 - 2020년 500억 - 2021년 600억 - 2022년 700억 취급목표	농어촌식품과 (560-2695)
3. 전라북도·고창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고창군 자체예산 지급	○ 전라북도 최초 고창군에서 지원했던 「농민 공익수당」이 2020년부터 전라북도도 고창군이 함께 지원	농생명지원과 (063-560-2521)
4.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 - 신규 식재비와 유기농자재를 보조금으로 지원	○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 신규식재 농가에 생산장려금인 보상금 지원(지급방법 간소화) - 토양검정 및 영농교육(2시간) 이수 필수	농생명지원과 (063-560-2531)
5. HACCP 인증시설 구축 사업 신설	<신 설>	○ 2020년 12월 1일 HACCP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인증시설 구축 지원	농어촌식품과 (063-560-2702)
6.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신 설>	○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	농생명지원과 (063-560-2521)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 설>	○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 1회 90일 연 2회(단, 출국후 30일 경과후 재입국), 1년 1회 150일	농생명지원과 (063-560-2516)
8.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농협 중앙회 군지부에서만 발급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농협중앙회 군지부 + 읍면 지역농협에서도 발급가능	농생명지원과 (063-560-2522)
9.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구	○ 경관지구 조성 면적 486ha	○ 경관지구 조성 면적 1,408ha (유채꽃 등 대규모 식재)	농생명지원과 (063-560-2527)
10. 친환경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 설>	○ 친환경인증 농가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를 지원	농생명지원과 (063-560-2526)
11.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 하우스 660㎡ ~ 3,300㎡ 노 지 660㎡ ~ 3,300㎡	○ 하우스 660㎡ ~ 16,500㎡ 노 지 660㎡ ~ 3,300㎡	농생명지원과 (063-560-2526)

12.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신 설>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허갈습 비료 지원	농생명지원과 (063-560-2532)
13.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신 설>	○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온·습도, 풍속, 관수 등 제어) 지원	농생명지원과 (063-560-2528)
14.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장기성필름 공동구매)	<신 설>	○ 장기성 필름 공동구매 지원 - 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사업부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	농생명지원과 (063-560-2533)
1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1어가당 65만원	○ 1어가당 70만원	해양수산과 (063-560-2633)
16.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확대	○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노르플록사신, 오픈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 바이올렛, 메틸렌 블루 검출 시 출하연기 ○ 에톡시퀸 검출 기준 없음	○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노르플록사신, 오픈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바이올렛, 메틸렌 블루 검출 시 폐기(검출되어서는 안 됨) ○ 에톡시퀸 검출 기준 없음	해양수산과 (063-560-2642)
17. 바다환경 지킴이 고용	<신 설>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수산과 (063-560-2646)
18. 어선의 안전조업 기준 강화	<신 설>	○ 어선 입출항 시 신고기관 신고 의무 ○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 출입항 금지 ○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해양수산과 (063-560-2647)
18.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신 설>	○ 낚시활동 중 쓰레기 투기 금지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 매년 안전성 검사 의무	해양수산과 (063-560-2647)
19.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신 설>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축산과 (063-560-2610)
20. 축산업에 대한 관리강화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점검 주기 : 2년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 허가농가 2년, 등록농가 4년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점검 주기 : 1년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 허가농가 1년, 등록농가 2년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과 (063-560-2610)

21.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화	○ 축산법상 양봉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제외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8.28.)시행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대상	축산과 (063-560-2610)
22. 닭·오리농가 입식전 사전신고제 시행	○ 농장 자율 입식 - 입식전 사전신고 권고	○ 닭·오리 사육농장 입식전 사전신고제 의무화 -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축산과 (063-560-2613)
23.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30일 이내 등록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30일 이내 등록	축산과 (063-560-2619)
24. 이력대상 확대	○ 국내산 쇠고기 ○ 수입산 쇠고기 ○ 국내산 돼지고기 ○ 수입산 돼지고기	○수입산 쇠고기 ○ 수입산 쇠고기 ○ 국내산 돼지고기 ○ 수입산 돼지고기 ○ 닭, 오리, 계란	축산과 (063-560-2618)
25. 축산물 이력법 과태료 추가 및 금액 변경	○ 신설 ○ 5개(10,20,30,40,50만원) 부과유형	○ 닭·오리·계란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 과태료 부과금액의 유형 단순화 및 전반적 상향(50,70,100만원)	축산과 (063-560-2618)
26. 조리·판매 축산물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수입산 이력축산물 ○ 신설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 축산물 ○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자 추가	축산과 (063-560-2618)
27. 농기계임대료 결제서비스 확대시행	○현금, 계좌입금, 카드	○현금, 계좌입금, 카드, 고창사랑상품권	농업기술센터 (063-560-8872)

2 문화예술체육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신 설>	○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범 및 역사문화관광사업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063-561-1110) 문화예술과 (063-560-2448)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문화누리카드 1인당 8만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9만원	문화예술과 (063-560-2452)
3.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신 설>	○ 고창군 전 향토문화유산(8개소)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추진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56)

4. 가을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	<신 설>	○ 가을철 고창군 주요관광지 시티투어 운영('20. 9. ~ 10.) - 선운사~학원농장~고창읍성 등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47)
5. 고인돌 박물관 VR, MR, AR 체험	<신 설>	○ VR, MR, AR 등 첨단 체험시스템 도입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52)
6.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 홍보프로그램 운영	<신 설>	○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윤도장과 함께하는 고인돌야행 -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 찾아가는 선사학교 및 청동기 불의과학 - 선사시대 과학캠프 등	문화유산관광과 (063-560-8664)
7. 고창군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 고창군수 겸임	○ 민간체육회장 선출	체육청소년사업소 (063-560-8911)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신 설>	○ 취약계층 초등생, 중학생 대상 방과 후 종합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활동, 전문체험활동, 자기개발 활동 등 - 40명(초20, 중20)	체육청소년사업소 (063-560-8915)

3.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호국보훈수당 확대 지원	○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중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선 순위자	○ 보훈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까지 확대 지원	사회복지과 (063-560-2271)
2. 경로 아미용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변경	○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 (1년, 60,000원)	○ 고창사랑상품권(이미용비 전용)으로 지원 (유효기간 5년)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사회복지과 (063-560-2290)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설	<신설>	○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 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및 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지원	사회복지과 (063-560-2280)
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신 설>	○ 1개소 확충	사회복지과 (063-560-2295)

5. 농어촌놀이터 확충	<신 설>	○ 1개소 확충	사회복지과 (063-560-2295)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무료 건강검진	<신 설>	○ 7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사회복지과 (063-560-2295)
7.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 맞춤형·종일형 운영 등	○ 보육과정 및 보육시간 변경 자동출결시스템 도입	사회복지과 (063-560-2296)
8.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 설>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 ○ 조현병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보건소 (063-560-8736)
9. 청년세대로 진입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신 설>	○ 관내 고등학교 졸업대상자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 600명 대상 / 1인 최고 1백만원	울력행정과 (063-560-2348)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초등학교 2,600원 ○ 중고등학교 3,300원	○ 초등학교 2,800원 ○ 중고등학교 3,500원	울력행정과 (063-560-2348)

4.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온라인 신청 및 납부	○ 연납신청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 연납신청방법(오프라인)	○ 1월로 조정(1월 16일~1월 31일) ○ 연납신청방법(온라인 포함) *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연납신청	생태환경과 (063-560-2872)
2. 취약계층 이용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대중교통차량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3년)	○ 대중교통차량 :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 가정·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10년)	생태환경과 (063-560-2872)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	<신 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고 연 10만원 지급	생태환경과 (063-560-2872)
4. 한반도 생태축 복원	○ 도로개설로 영산기맥 단절	○ 육교형 생태통로 건설 3개년 계획 추진 - 1차년도 : 설계 - 2·3차년도 : 시공	생태환경과 (063-560-2688)

5. 고창군 지역환경교육 센터 운영	〈신 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생태환경과 (063-560-2688)
6. 대기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 현행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 기준 미설정 ○ 배출부과금 항목 : 염소 등 8종 - 염소 7,400원/kg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특정대기 유해물질 8종 배출기준 신설 ○ 배출부과금항목 : 질소산화물 신설, 염소 삭제 ○ 배출부과금 항목 : 질소산화물, 염소삭제 - 질소산화물 2,130원/kg	생태환경과 (063-560-2876)
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제도개선	〈신 설〉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별 해체를 통해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	생태환경과 (063-560-2881)
8.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혈액, 체액,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 처리방법 - (배출) 전용용기 - (보관)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 (운반) 전용 냉장차량 - (처리) 전용소각장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 처리방법 - (배출)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에 배출 - (보관) 별도 보관장소,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기저귀만 별도) - (처리) 일반소각장	생태환경과 (063-560-2881)
9. 폐수처리업 허가제 변경	○ 과징금 부과도액(3억원이하) - 대체부과횟수 제한없음 ○ 측정기기부착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폐수처리 등록제	○ 과징금 부과도액(매출액의 5%이내) - 대체부과횟수 1회/2년 ○ 측정기기 부착(폐수처리업추가) ○ 폐수처리업 허가제 ○ 폐수처리업 정기검사제도 도입	생태환경과 (063-560-2876)
10.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신 설〉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 부숙도 검사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 살포 의무화 -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생태환경과 (063-560-2883)
11. 수질오염물질 유기물 지표 전환	○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지표 - CODMn, BOD	○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지표 - TOC, BOD	생태환경과 (063-560-2883)
12.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 최대 1천만원 지원사업 (균비 50%, 자부담 50%)	○ 기존 준비사업의 업종 확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아미용업/ 휴게음식점 추가)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설 - 개소당 최대 7백만원 지원	생태환경과 (063-560-2888)

5. 건설경제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한층 더 편리해진 고창사랑상품권	지류식 발행 (1천원, 5천원, 1만원권)	지류식 발행 (1천원, 5천원, 1만원권)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	상생경제과 (063-560-235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상품권 지원	〈신 설〉	○ 70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20만원상당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상생경제과 (063-560-2571)
3.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신 설〉	○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운영(21개소)	상생경제과 (063-560-2418)
4. 행복콜택시 확대 운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 거리 1km ○ 대상 : 13개 읍면 48개 마을	○ 마을회관~버스승강장 거리 0.7km ○ 대상 : 13개 읍면 89개 마을	상생경제과 (063-560-2572)
5. 고창다운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추진	〈신 설〉	○ 고창군 색깔에 맞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건설도시과 (063-560-2557)

6. 재난안전·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 센터 고창분소 설치운영	〈신 설〉	○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 원전관련 교육 및 알림 등	재난안전과 (063-560-2660)
2.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 주택, 온실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상가·공장(확대)	재난안전과 (063-560-2664)
3.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금액 1,000만원 이내	○○ 보장금액 2,000만원까지 확대	재난안전과 (063-560-2656)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 율체계 합리적 개편	○ 3단계 단순누진세율 - 6억이하 : 1% - 9억이하 : 2% - 9억초과 : 3%	○ 누진단계 세분화 세율 - 6억이하 : 1% - 9억이하 : 1.01~2.99% - 9억초과 : 3%	재무과 (063-560-2477)

<p>5.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실시</p>	<p>〈신 설〉</p>	<p>○ 납부자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및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외수입 고지·납부 가능</p>	<p>재무과 (063-560-2493)</p>
<p>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p>	 <p>(~19년) 세무서만 방문</p>	 <p>(~19년) 세무서만 방문</p> <p>납세자 선택</p> <p>226개 (세무서) + 228개 (지자체)</p> <p>(~19년) 세무서만 방문</p> <p>('20년~) 세무서 또는 지자체 방문</p>	<p>재무과 (063-560-2489)</p>
<p>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p>	<p>○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p> <p>○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재량 사항</p>	<p>○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p> <p>○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p> <p>※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p> <p>〈조항 신설〉</p> <p>○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p> <p>○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p> <p>※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p>	<p>종합민원과 (063-560-2422)</p>
<p>8. 공인중개사법 개정</p>	<p>〈조항 신설〉</p>	<p>○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p> <p>○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p> <p>※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p> <p>○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p> <p>○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p> <p>※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p>	<p>종합민원과 (063-560-2422)</p>
<p>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한시적 완화 종료</p>	<p>○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p> <p>- 도시지역 : 1,500㎡이상,</p> <p>- 도시지역 외 지역 : 2,500㎡이상</p>	<p>○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적용</p> <p>- 도시지역 : 990㎡이상,</p> <p>- 도시지역 외 지역 : 1,650㎡이상</p> <p>※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p>	<p>종합민원과 (063-560-2422)</p>